

유의사항

1. 「주민등록법」 제10조의3제1항 본문에 따라 해외체류신고를 한 해외체류자가 신고한 국내주소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새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. 이 경우 해외체류자가 어느 세대에도 속하지 않게 되어 행정상 관리주소로 변경하려는 때에는 해외체류신고 당시 거주지를 관할하는 읍·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의 주소로 변경해야 합니다.
2. '변경대상자' 칸의 '세대주와의 관계' 칸에는 변경될 주소의 세대주와 변경할 사람과의 관계를 작성합니다.
3. '연락처' 는 희망하는 사람만 쓰시기 바라며, 연락처가 바뀔 때에는 관할 읍·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.
4. 변경신고를 위임받아 신고하는 사람은 '위임장' 칸에 변경할 사람 본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고, 변경할 사람 본인의 주민등록증·여권 등 신분증명서를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. 이 경우 위임장을 거짓으로 작성하는 때에는 「형법」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.
5. 해외체류 시 속할 세대의 주소가 다가구주택 및 준주택(기숙사, 다중생활시설, 노인복지주택, 오피스텔이 해당됩니다)인 경우 '건축물의 이름, 동 번호 및 호수' 를 작성하며, 건축물의 이름 또는 동 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이름 또는 동 번호를 생략하되, 호수가 없는 경우에는 층수를 작성합니다. '건축물의 이름, 동 번호 및 호수' 는 주민등록 관리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공법관계에서의 주소의 구성요소로는 인정되지 않으며, 「주민등록법 시행령」 제9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에 전산자료의 형태로 제공될 수 있습니다.

※ 다만, 「도로명주소법」에 따라 상세주소(동, 층, 호)가 부여된 경우 공법관계에서의 주소의 구성요소로 신고 가능합니다.